

## 금융결제원CMS 이용계약서

하나은행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)과 회사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)는 금융결제원CMS(이하 ‘CMS’라 한다) 이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이 계약은 을이 CMS를 이용함에 있어 갑과 을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전제조건)

이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 이용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,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.

### 제3조(이용계좌)

① 을은 CMS 업무처리에 필요한 계좌(이하 ‘계좌’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구 분	계좌번호	예금주명	비고
출금이체			다수 납부자계좌에서 출금
입금이체			다수 수취인계좌로 입금

②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이 계약을 변경 체결하고, 금융결제원의 계좌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4조(고객수수료)

① 을이 CMS 이용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고객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	고객수수료		입금(출금)대행비용		이용여부(○,×)
		이체건당	의뢰건당	이체건당	이체건당	
출금이체	3일	160원	20 원	120 원		
	당일	200원	40 원	260 원		
입금이체		100원	-	100 원		

② 을은 계좌를 통하여 고객수수료를 자동 지급한다. 갑은 출금이체의 경우 이체금액을 계좌에 입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하고,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포함하여 출금한다.

③ 갑은 출금이체금액이 고객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계좌에서 해당 수수료를 인출한다.

④ 고객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변경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해야 하고, 을이 변경개시일 2주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제5조(계약기간)

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며,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

